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9가단23563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주식회사

판결 선고 2019. 8.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897,711원 및 그 증가. 16,277,2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8.부터나. 56,262,78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9.부터각 2019. 5. 31.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5.31.까지의 기간에는 기존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인 연 15%가 적용되나, 2019. 6. 1.부터는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판사 이지현

별지